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1 / 32

목차

1. 총칙	5
제 1조 (목적)	5
제 2조 (적용범위)	5
제 3조 (용어정의)	5
2. 역할 및 책임	6
제 4조 (개인정보보호 조직)	6
제 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7
제 6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7
제 7조 (개인정보취급자)	8
3. 개인정보의 보호	8
제 8조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8
제 9조 (개인정보 보호 활동)	8
제 10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9
4. 개인정보의 처리	10
제 11조 (개인정보 수집)	10
제 12조 (이용자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10
제 13조 (개인정보 이용)	11
제 14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1
제 15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12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2 / 32

제 16조 (대리인의 범위)	13
제 17조 (개인정보 제공)	13
제 18조 (개인정보 제공 동의)	14
제 19조 (개인정보 저장)	14
제 20조 (개인정보 파기)	15
제 21조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16
제 22조 (민감정보 처리제한)	16
제 23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 처리 제한)	16
제 24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17
5. 개인정보 취급 교육	17
제 25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17
6. 이용자의 권리보장	17
제 26조 (이용자의 권리)	17
제 27조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17
제 28조 (개인정보 처리 정지 등)	18
제 29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8
제 30조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19
제 31조 (광고성 정보 전송)	19
제 32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 통지)	20
7.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20
제 33조 (개인정보 취급제한)	20
제 34조 (개인정보취급자 정보보호서약서 징구)	20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3 / 32

제 35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21
제 36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발급 기록 보관)	21
제 37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의 변경 및 말소)	21
제 3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의 PC 보안)	21
제 39조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정책)	22
제 40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22
제 41조 (개인정보 출력 · 표시 제한 보호조치)	23
8. 개인정보 위탁	23
제 42조 (개인정보 위탁관리)	23
제 43조 (위탁업체 관리)	24
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24
제 4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24
제 45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25
제 46조 (안내판의 설치)	25
제 47조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25
제 48조 (영상정보 보관 및 파기)	26
제 49조 (영상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26
제 5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27
제 51조 (영상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27
제 52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28
제 53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28
제 54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28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4 / 32

10. 개인정보 보안사고	28
제 55조 (개인정보 사고 대응)	28
제 56조 (개인정보 유출통지)	29
11. 가명정보 처리	29
제 57조 (가명정보의 처리)	29
제 58조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30
제 59조 (영업양도 및 국외이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30
부 칙	31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5 / 32

1. 총칙

제 1조 (목적)

본 지침은 (주)세아홀딩스(이하 '회사'라고 함)에서 처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사용하는 등 일련의 업무 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 저장, 이용, 전송 및 파기되는 개인 정보 생명주기 전반에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 및 외주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제 3조 (용어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 (1)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2) "추가 정보"란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말한다.
3. "익명정보"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4. "생체인식정보"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할 목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6 / 32

5.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프로모션·이벤트 등에 응모한 자 등 회사가 수집·취급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보관·처리·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시스템을 말하며, 이용자와 비 이용자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분류한다.
7. "개인정보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8.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9. "민감정보"라 함은 이용자의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 등 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10. "고유식별정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써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말한다.
11. "제3자 제공"이라 함은, 회사가 업무 제휴, 공동 마케팅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외부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2. "처리위탁"이라 함은 회사가 외부의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관리하는 이용자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파기 등의 업무까지 함께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역할 및 책임

제 4조 (개인정보보호 조직)

1. 개인정보 보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 보호관련 업무의 총괄 운영·관리·감독
 - (2) 개인정보 보호관련 부서의 조직 및 운영
 - (3) 정부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관련 내규의 현행화
 -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총괄 및 개인정보 보호관련 내규의 준수 여부 점검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7 / 32

- (5) 개인정보처리 관련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
- (6) 기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제 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하 “CPO - Chief Privacy Officer”이라 칭함)는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임원으로 최고경영자(CEO)가 지정한다.
2. CPO는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
 -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정보 보호 업무·조직의 총괄 관리·감독
 - (3) 개인정보 보호 정책·지침의 수립 및 관련 절차의 승인·관리·감독
 - (4)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계획 수립
 - (5) 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의 경영계획 반영 및 집행
 - (6) CPO는 제2호 내지 제5호를 포함한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CPO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CPO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공개한다.

제 6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CPO가 지정한다.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CPO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
 - (1)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의 실무
 - (2) 개인정보 취급현황 분석 및 위험평가 실무
 - (3) 개인정보 보호관련 지침을 문서화하고 변경사항을 기록관리
 - (4)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내·외부 변화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개정
 - (5)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현황 점검
 - (6) 개인정보 위탁업체의 개인정보 관리상황에 관한 관리·감독
 - (7)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8 / 32

제 7조 (개인정보취급자)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또는 개인정보처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
 -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취급
 - (2)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본 지침을 준수
 - (3) 보안사고 예방활동
 - (4) 개인정보 보호조직의 개인정보 보호이행 및 점검에 협조
 -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에 대한 현황보고 및 점검
 -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획, 기능 개발, 접속 및 이용에 대한 로그 기록, 접근통제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3. 개인정보의 보호

제 8조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한다.
3.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제 9조 (개인정보 보호 활동)

1. 회사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자산에 대해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9 / 32

2. 회사는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자산을 식별, 분류, 관리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는 개인정보취급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 시 임직원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본 지침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이미지를 훼손한 임직원에게 대해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5. 개인정보취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연 1회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7.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 이용 또는 조회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10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통해 이용자가 항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소속, 성명, 직위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3)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4)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6)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 (7) 개인정보의 처리위탁(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8)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
 - (10)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2.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는 첫 화면(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에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10 / 32

4.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한 경우 그 근거가 된 법령 및 조항 등 예외 사유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한다

4. 개인정보의 처리

제 11조 (개인정보 수집)

1. 개인정보는 이용자와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
2. 개인정보는 이용자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등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 이용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용자 동의 없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항목과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선택항목으로 구분한다.
4.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IP address, 접속로그, 이용로그 등으로 서비스 운영에 꼭 필요한 정보들에 한한다.
5.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므로 필수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이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제 12조 (이용자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1. 이용자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3)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11 / 32

-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
-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자에게 수집출처에 대해 알린 기록을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시까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 13조 (개인정보 이용)

1. 개인정보취급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이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고지 범위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이용자로부터 1.항 (1)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수집 및 이용 목적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12 / 32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의 내용
- 3. 개인정보 수집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수집하여야 한다.
- 4. 이용자에게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을 경우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5.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6. 5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 15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 1.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3.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아동이 제공한 진정한 법정대리인의 정보인지와 법정대리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4. 3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거부가 있거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을 남기고 보존해야 한다.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13 / 32

제 16조 (대리인의 범위)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해당되지 않음

제 17조 (개인정보 제공)

1.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 (1)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이익을 위한 경우
 - (5)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을 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6)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7)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8)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의 국외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14 / 32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 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 18조 (개인정보 제공 동의)

1.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는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한다.
3.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19조 (개인정보 저장)

1.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저장되어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만 접근가능 하다.
2. 개인정보를 Database화 하여 시스템에 저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개인정보가 저장된 시스템은 출입통제가 이루어지는 별도 공간에 위치
 - (2) 저장된 개인정보의 보안등급에 따라 접근통제 구현
 - (3) 개인정보 데이터는 주기적인 백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백업 데이터도 원본 데이터에 준하여 안전하게 보관
3. 개인정보를 파일 또는 데이터 형태로 개인 PC에 저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개인정보는 개인 PC에 저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15 / 32

- (2)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를 PC에 저장할 경우 각 사용자 본인이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을 짐
- (3) 개인 PC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은 암호화하여 보관
- 4. 개인정보를 별도 저장매체에 저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개인정보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저장매체에 저장 가능
 - (2) 개인정보를 저장매체에 저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정보보호담당자의 승인을 득함
- 5.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를 보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잠금 장치 등이 적용된 안전한 곳에 별도 보관
 - (2)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는 캐비닛 등에 보관하고, 보관 캐비닛은 접근 가능 인력을 최소화 하도록 통제 구현
 - (3)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가 이관되는 경우 그 내역이 기록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제 20조 (개인정보 파기)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달성한 경우
 - (2)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이 종료된 경우
 - (3) 해당 이용자서비스를 종료한 경우
 - (4)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
- 2. 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 회사는 아래와 같이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접속지의 추적자료 : 3개월
 - (2) 그 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 12개월
- 3. 회사는 이용자가 1년(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거나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또는 달리 정한 기간)동안 서비스를 미 이용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의 30일 전까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 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16 / 32

(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관할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파기 시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 (1)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 사용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 21조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1.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등 처리할 수 없다.
2.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3. 법적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홈페이지 회원가입 단계 또는 본인확인 절차상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22조 (민감정보 처리제한)

회사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이용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이용자의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와 별도로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 23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 처리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할 수 없다.

- (1) 이용자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17 / 32

제 24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이용자의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1.항의 정보 중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않도록 이를 일방향 암호화를 하여야 하며,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취급 교육

제 25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은 사내(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당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6. 이용자의 권리보장

제 26조 (이용자의 권리)

- 이용자의 다음 각 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전송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의 정지·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 27조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제한 및 거절할 수 있다.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18 / 32

- (1) 법령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3.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한다.
4.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방법은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제 28조 (개인정보 처리 정지 등)

1.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하면, 해당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회사가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이용자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2.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 29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전송·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당해 이용자에게만 허용된다. 다만,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범위 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에 회원정보 변경 메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19 / 32

4. 회사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개인정보의 이용동의 철회 또는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사이트 내에 화면탈퇴 메뉴를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개인정보 이용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 또는 서비스의 상담 페이지를 이용하여 불만사항을 접수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0조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1.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처리위탁 및 제3자 제공 포함)을 연 1회 이상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3) 개인정보 처리위탁 받은 자 및 그 처리위탁 업무의 내용

제 31조 (광고성 정보 전송)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다.
2.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 및 포함하여 통지 하여야 하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1시 ~ 08시를 피하여 전송
 - (2) 필수 안내 사항
 -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2)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조치 및 방법
 - (3) 금지 행위
 - (1) 수신 거부, 동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 (2) 연락처를 무작위로 만들어 광고하는 조치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20 / 32

- (3) 전화번호, 이메일을 자동으로 등록하여 광고하는 조치
 - (4) 전송자의 신원이나 출처를 감추는 조치
 - (5) 수신자를 기만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3.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제공
 4. 수신동의/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 등을 안내
 -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한 자에게 오발송되지 않도록 수신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 32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 통지)

1.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이용자의 수신 동의 유지 여부를 수신동의 받은 날로부터 매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하며, 수신동의 여부 확인 시 수신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1) 전송자의 명칭
 - (2) 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
 - (3) 수신동위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7.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제 33조 (개인정보 취급제한)

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개인정보취급 업무, 개인정보관련 시스템 개발, 이용자 상담 등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의 취급,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제 34조 (개인정보취급자 정보보호서약서 징구)

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21 / 32

2.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보보호서약서 징구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3. 임직원 정보보호서약서 징구는 입·퇴사 시 인사 담당자가 보관한다.
4. 외부인력은 사업 투입시 정보보호서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제 35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1. 회사 임직원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계정(사용자 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계정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계정은 1인 1계정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사용자와 아이디(ID)를 공유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6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발급 기록 보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계정 발급 내역을 5년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접근계정을 변경·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37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의 변경 및 말소)

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퇴직, 업무변경 등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접근계정 또는 접근권한이 불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접근계정 또는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접근권한 검토 및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3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의 PC 보안)

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PC에 개인정보취급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화면보호기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22 / 32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PC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최신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엔진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가 P2P 프로그램 또는 파일 공유 설정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자 이외 자에 의해 열람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PC 또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 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9조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정책)

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운영하여 해킹이나 도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패스워드는 연속된 숫자, 아이디 포함을 제한하고,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문자열을 사용을 지양하며, 영문자, 숫자를 포함하여 2종류 조합 10자리 이상 또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3종류 8자리 이상 설정하여야 한다.
 - (2) 비밀번호 강제 변경 주기 적용(90일)하여야 한다.
 - (3) 패스워드 5회 실패 시 계정이 잠기도록 임계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 40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탐지시스템 및 침입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을 사전에 허용된 경로 또는 물리적 공간에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한 접속로그를 기록하고 최소 1년 이상 이를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하며 기록해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다.
 - (1) 사용자정보(ID)
 - (2) 접속 일시(년월일시분초)
 - (3) 접속지 정보(접속자IP)
 - (4) 처리한 고객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 (5) 수행 업무(조회, 수정, 삭제 등)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23 / 32

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2.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취급자는 2. 항의 접근로그가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정기적 백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41조 (개인정보 출력 · 표시 제한 보호조치)

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인가된 개인정보취급자 이외의 자가 개인정보를 직접 출력, 복사 또는 인쇄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라 인가된 개인정보취급자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출력, 복사 또는 인쇄하는 경우에도 그 용도를 특정하여 출력항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 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출력 복사기록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취급자는 출력물을 사용 종료한 경우 즉시 세절기를 이용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조회, 출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표시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할 수 있다.
 - (1) 성명 중 이름의 가운데 글자
 - (2) ID : 세번째 글자 이상
 - (3) 주소의 읍, 면, 동 (도로명 주소의 경우 도로명 이하)

8. 개인정보 위탁

제 42조 (개인정보 위탁관리)

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포함)
 - (1)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받는 자
 - (2)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24 / 32

2.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시 수탁업체와 위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고 그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취급 관련 요청사항 준수 여부
 - (2)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및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책임
 - (4)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
 - (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이행 여부
 - (6)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7)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8)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9)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수탁자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10)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3.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3조 (위탁업체 관리)

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위탁업체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개인정보의 취급 목적에 벗어난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위탁업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 4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25 / 32

제 45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1.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1.항의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4)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46조 (안내판의 설치)

1. 회사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설치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직책 및 연락처
 - (4)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회사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 47조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26 / 32

제 48조 (영상정보 보관 및 파기)

1. 회사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21일 이내로 한다.
3.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2)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 49조 (영상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1.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2. 회사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27 / 32

제 5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1. 회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 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 51조 (영상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1. 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2. 회사는 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회사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3.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2)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회사는 2.항 및 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5. 정보주체는 회사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해당 파기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28 / 32

제 52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회사는 열람 등 조치를 취할 때,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3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1. 회사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 장치 설치

제 54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0. 개인정보 보안사고

제 55조 (개인정보 사고 대응)

1. 임직원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함)되는 등 개인정보 관련 보안사고를 인지했을 때에는 즉시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대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29 / 32

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개인정보사고 대응관련 사항은 '보안사고 대응 지침'을 따른다.

제 56조 (개인정보 유출통지)

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4)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5)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2.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이용자에게 통지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항에서 제시한 통지하여야 하는 항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1.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여야 한다.

11. 가명정보 처리

제 57조 (가명정보의 처리)

1.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30 / 32

제 58조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을 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 (5)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4.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분리 및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통제해야 한다.

제 59조 (영업양도 및 국외이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1.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처리위탁·보관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2.항의 모든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에는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회사는 1.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31 / 32

3. 회사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아래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 (3) 그 밖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 칙

1. (시행일)

본 지침의 시행일은 공포 후 202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

회사의 정보보호 조직에 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하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사규가 정하는 바에 준한다.

3. (예외 적용)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명시한 내용이라도 CPO의 승인을 받아 예외 취급할 수 있다.

- (1) 기술 환경의 변화로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 (2) 기술적, 관리적 필요에 따라 지침의 적용을 보류할 긴급할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보호	문서번호	SH-A-5402
		작성부서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	개정번호	1
		페이지	32 / 32

(3) 기타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경우

제.개정 이력			
Rev.	일자	제.개정 내용	작성부서
1	2023.09.01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	정보보호팀